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6. 18.(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5.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6.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0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 실무를 일치시키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포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 고향사랑기부금법,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 내용 반영
- 기타 실무와 상이한 조항 정비
 - 답례품선정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 기금 총당 조항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정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각종 행사, 교류사업, 기부자 예우 및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근거 명시
 - 고향사랑기부제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실무와 상이한 경우 조례를 정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답례품 선정위원회 중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함에 따라 답례품 선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실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기금을 충당해야하는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답례품 제공에 대한 기금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점, 실무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한점 등을 볼 때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지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1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민선 8기 제2~3차년도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 중 행정구역 조정 관련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검토결과를 수용
- 구지면은 2022년 2월부터 계속해서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였고, 대부분 지역이 도시화를 이루고 있어,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 40%,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를 넘어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을 갖추
-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승격 추진에 대한 구지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현황

구분	면적 (km ²)	행정구역			행정기구 정·현원		
		법정리	행정리	반	기구	정원	현원
달성군	428.37	95	334	2,890	6국 1실 28과 2직속기관	669	672.5
구지면	39.84	15	34	192	1개면 6담당	22	22

나. 도시여건 현황

(2024. 12. 31. 기준)

구분	인구	면적	가구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인구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구지면	20,764명 (19,021명)	39.84km ²	8,988가구	15,532명	82%	7,922가구	88%

다. 인구추이

(2024. 12. 31.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가율	
						5년 평균	전년도 비교
구지면	14,151명 (13,263명)	19,860명 (18,950명)	20,734명 (19,609명)	20,844명 (19,380명)	20,764명 (19,021명)	10% (9%)	-0.3% (-1.8%)

* ()은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인구수

라. 향후 인구증가 요인

- 신규 주거시설(착공 및 입주 진행 시설)

주거시설 명	세대수	인구수	입주년월
총 계	448	1,422	
대구국가산단 행복주택	448	1,012	'28. 1. 예정
(주)엘엔애프 기숙사	-	410	입주 중

- 신규 주거시설(공동주택 부지)

구분		세대수	인구수
총 계		3,707	8,377
60m ² 이하	A6	1,508	3,408
60m ² ~85m ² 이하	A7-2	1,272	2,874
	A9	927	2,095

※ 통계청 2022~2052 장래가구추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26명 반영

마. 공공시설

구분	출장소 수	파출소	농협	우체국	지도소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교	역	예비군 중 대	의료 시설	기타
구지면	-	1	1	1	-	2	2	-	-	15	13

※ 기타 : 중앙119구조본부, 도동서원, 구지축구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작은도서관,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물기술인증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구지 새마을금고, 노사평화의 전당,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미래차시험연구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바. 재정규모

- 세출예산 : 4,097백만 원(인건비 : 2,368백만 원)
- 지방세 : 37,576백만 원
- 세외수입 : 690백만 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구지면의 읍승격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지면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읍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인구 2만 명 이상을 지속 유지하고 있어 법 제10조를 충족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인구는 20,764명입니다. 특히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인 시가지 인구 비율 82%,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88%로 법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수용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인구 반영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게 되면서 정책 수용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 구지면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달성2차 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단지 종사자 및 정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민원 접수 건수는 33,446건에서 41,77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복지·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구지면은 외국인 주민수가 관내 2번째로 많은 지역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정착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다문화 행정 및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5년 4월 진행된 주민 의견조사에서는 전체 세대 중 58%가 참여하였고, 그 중 99.9%가 읍 승격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수치이며, 승격 시 생활 인프라 확충, 교육·문화 기반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아파트 9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3,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선 철도는 구지면과 대구 도심 및 창원, 부산을 연결하게 되어 정주·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연계된 유가읍·현풍읍이 읍으로 승격된 사례와 유사한 발전 경로로, 구지면 또한 동일 생활권 내 도시로서 그 위상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처럼 구지면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 수요의 증가, 주민의 적극적 지지, 교통 및 산업 기반 확충,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읍 승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2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일몰 기한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자동차세 감면기한 (현행) 2025. 6. 30. → (개정) 2027. 12. 3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자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감면신청은 2024년까지였으나, 2024년 일부개정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이에 기존 조례의 제2조 면제 기한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2027년까지 연장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3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 변경(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과 관련하여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입니다.
- 현행 조항은 ‘사용허가일’ 과 ‘실제 사용 시작일’ 을 모두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어 행정적 혼선을 유발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 로 단일화함으로써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실제 사용일에 대한 해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향후 회계, 감사 등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의 ‘실제 사용 시작일’ 을 기준으로 처리된 사례의 경우 조례 개정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4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
 -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노후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주민자치활동·교류행사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 기후변화, 미세먼지 농도 증가, 계절 간 온도 편차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외 운동 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지훈련 특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확충,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스포츠 관광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

- 비슬산 유스호스텔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공간이 부족하여 단체행사를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현재 잔디광장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단체 이용객 확보 및 호스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

- 위 치 : 현풍읍 부리 352-2번지 일원
- 기 간 : 2025. ~ 2027. 12.
- 규 모 : 부지면적 3,253㎡ 연면적 3,025.69㎡, 건축면적 757.32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1층 : 현풍읍 행정업무공간
 - 2층 : 건강증진지원공간
 - 3층 : 청소년 지원공간
 - 4층 : 대강당, 현풍읍 역사전시관
- 총사업비 : 159.11억원(국비 50억, 시비 25억, 군비 84.11억)
 - 신축비 158.71억(공사비 135억, 용역비 및 예비비 23.71억)
 - 프로그램 운영비 0.4억

※기준가격	
- 건물 철거(시가표준액)	: 319,142,398원
- 건물 신축(사업비)	: 15,871,000,000원

- 추진상황
 - 2024. 4. :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구상 회의
 - 2024. 6. : 현풍읍 도시재생 실행계획 HUG 사전컨설팅
 - 2024. 8. :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설명회
 - 2024. 9. : 시·도 공모 신청
 - 2024. 10. ~ 11.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시·도광역평가(발표평가)
 - 2024. 11.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타당성 평가(발표평가)
 - 2024.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결

과 발표(선정)

- 2025. 1. : 2025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
- 2025. 3. : 2025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조건부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025. 5. ~ 10. : 건축 기획 용역 진행
 - 2025. 10. ~ 2026. 9. : 기본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진행
 - 2026. 10. ~ 2027. 12. : 착공 및 준공

나.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 위 치 : 화원읍 명곡리 8-2번지 일원(화원 명곡체육공원)
- 기 간 : 2024. 5. ~ 2027. 2.
- 규 모 : 부지면적 22,870㎡, 연면적 13,500㎡, 지상1층
- 주요시설 : 에어돔 축구장 1식
- 총사업비 : 100억원(전액군비)
 - 공사비 82억, 설계비 10억, 예비비 8억

※기준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0,000,000,000원

- 추진상황
 - 2024. 5. ~ 2025. 3.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25. 4. : 사업계획 수립
 - 2025. 4. ~ 7. : 공원조성변경계획 용역 및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5. 7. ~ 9. : 市 투자심사 진행
 - 2025. 7. ~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5. 8. : 의회현안사업 보고
 - 2025. 9.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5. 11. : 일상감사 진행(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2026. 1. ~ 3. :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용역 일반경쟁입찰
- 2026. 3. ~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6. 7. ~ 2027. 2. :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 에어돔 설계·제작
- 2026. 10. ~ 2027. 2. : 착공 및 준공

다.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

- 위 치 : 유가읍 용리 31-2번지
- 기 간 : 2025. 2. ~ 2026. 10.
- 규 모
 - 증축(535㎡) : 대강당 1개소(100인), 중회의실 2개소(30인)
 - 리모델링(1,363㎡) : 로비,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노래방
- 총사업비 : 21.45억원 (증축비 19.21억)
 - 설계비 0.56억, 공사비 18.89억, 감리비 1.74억, 기타 0.26억

※기준가격

- 건물 증축(사업비) : 1,921,000,000원

- 추진상황
 - 2025. 2. : 사업계획 수립
 - 2025. 4. : 공공건축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25. 7. : 투자심사
 - 2025. 9. : 사업예산 편성
 - 2025. 10. :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
 - 2026. 4. : 착공
 - 2026. 10. : 준공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2025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 우선,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현풍읍 부리 352-2번지 일원에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9억 1,100만원(국비 50억, 시비 25억, 군비 8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사는 행정, 복지, 청소년 활동, 역사문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달성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사업은 약 13,500㎡ 규모의 에어돔 축구장을 포함하는 시설로, 총 100억 원의 군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실내 체육 공간 확충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제고, 주민 건강증진 및 체육 인프라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 번째로 ‘비슬산 유스호스텔 증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의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체류객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증축 계획입니다. 증축 후에는 숙박 공간의 확충뿐 아니라 세미나실, 체험학습 공간 등 프로그램 기능이 강화되어 비슬산권 관광 거점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수련활동, 타 지

역 수학여행 유치 등 교육·관광 기능이 연계되며, 실질적 운영성과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이번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 2건의 신축건물과 1건의 기타건물, 약 280억원 가량의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1개의 건물을 처분하여 3억원 가량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 이처럼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별로 공공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재정적 타당성 및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5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 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노인복지관	옥포읍 옥포로 13	2,999.68㎡ (지하1층, 지상3층)	17명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시설장	부장	정규직	비정규직
인 원	17	1	1	8	7

라. 위탁기간 : 2025. 8. 1. ~ 2030. 7. 31. (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4.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5. 4. : 운영평가 서류 접수

○ 2025. 4.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평균 90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향후일정

- 2025. 6. : 군의회 동의

- 2025. 7. : 재계약체결 및 공보 게재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2020. 8. ~ 2025. 7.)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 교양·오락 등 다양한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①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② 기부문화 정착사업, ③ 복지프로그램 개발사업, ④ 복지시설 간 협력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 설립되었으며, 2009년 처음 수탁기간으로 선정된 이후, 총 16년간 3회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2025. 7.)하였으며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이 재계약 의사 표시를 해 오음에 따라,
- 현 수탁기관을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90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가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되었으며,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86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점포 전세금 대여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점포 전세금 대여금 상한액 인상(안 제10조제2항)
 - 현행 :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개정 :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단, 개인창업자 : 현행 2천만원 이하 => 개정 3천만원 이하
- 점포 전세금 대여기간 연장(안 제10조제3항)
 - 현행 : 최장 6년 => 개정 : 최장 10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 자활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와 직업훈련, 창업, 자산형성 등의 다양한 자활사업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상 기금의 용도는 정해져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례로써 기금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26조의4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임대지원의 경우 1천만원~3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3천만원 한도(2024년 한도 상향)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 최장 10년까지 지자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다 군민에게 복리를 제공하고자 한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